2021. 6. 10. ~ 6. 29.
- 20일간 -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 사 결 과

의안 번호	의 안 명	의결 일자	심사 결과
2136	2020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6.29.	원안가결
2137	2020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6.29.	원안가결
2138	2020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6.29.	원안가결
2139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0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1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2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4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5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2146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1.6.14.	원안가결

주 요 내 용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20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세입·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계	**609,874,977,950**	**618,803,937,228**	**473,750,223,120**	**145,053,714,108**
일반회계	**597,348,118,310**	605,054,011,154	467,780,553,620	137,273,457,534
특별회계	**12,526,859,640**	13,749,926,074	5,969,669,500	7,780,256,574

-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145,053,714,108**	**60,052,204,180**	**19,031,113,330**	**19,659,309,010**	**6,139,876,490**	**40,171,211,098**
일반회계	**137,273,457,534**	59,848,492,040	18,788,238,000	19,659,309,010	6,061,987,540	32,915,430,944
특별회계	**7,780,256,574**	203,712,140	242,875,330	-	77,888,950	7,255,780,154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2020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일반회계) : 7,053,204,000원
- 예비비지출 결정액(일반회계) : 5,349,000,000원
- 예비비 지출액 : 4,795,172,440원
- 이 월 액 : 39,635,000원
- 집 행 잔 액 : 514,192,560원
- 주요 지출내역

  、 집중호우, 태풍(마이삭, 하이선) 피해 복구 : 3,276,910,000원

  、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등 : 1,532,333,000원

  、 농작물, 임산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325,070,000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AI 차단방역 : 214,687,000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2020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20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운용 결과를 장성군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원)

기금명 (운용부서)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입액 (다)	지출액 (라)	
합 계	7,968,744,654	9,514,330,137	10,034,516,297	520,186,160	17,483,074,7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 획 실)		8,800,000,000	8,800,000,000		8,800,000,000
사회복지기금 (주민복지과)	3,443,036,640	△15,199,966	92,305,034	107,505,000	3,427,836,674
체육진흥기금 (문화관광과)	1,610,935,780	313,248,565	322,487,845	9,239,280	1,924,184,345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환경위생과)	1,114,967,150	207,540,620	337,540,620	130,000,000	1,322,507,770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	70,159,004	1,062,820	7,246,940	6,184,120	71,221,824
재난관리기금 (안전건설과)	1,729,646,080	207,678,098	474,935,858	267,257,760	1,937,324,178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 휴먼옛체로 정해져 있어 쉽게 알

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 2020. 7. 1일자 조직개편 이후 공인 업무는 소통정보실 소관으로 개편되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의결사항)

- 「장성군 공인 조례」 제5조 “한글 휴먼옛체”를 “한글”로 개정
- 「장성군 공인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4조 “총무과장”을 “소통정보실장” 으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2020. 7. 1일자 조직개편 이후 행정정보공개업무는 소통정보실 소관으로 개편되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0조 제3항 “총무과장”을 “소통정보실장”으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안 제10조)
-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정비(안 제1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보훈명예수당 신청시 ‘장성군에 주소를 1년 이상 거주’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에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0조(지급대상) 중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을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소를”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유족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족수당 신설 및 주소 기준 조항(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 지원 범위 (안 제4조)

· 유족수당 : 매월50,000원 지급

- 변경신청 신설(안 제8조)

·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서 제출 - 별지 제4호 서식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8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미래도시에 맞는 주소체계 고도화 및 국민 불편사항 등 개선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 정비 추진

○ **주요내용**(의결사항)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장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변경) 장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사용 확대(안 제3조)

  • (당초)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위주

  • **(변경)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 포함**

- 주소정보 사용 촉진(안 제6조, 안 제7조)

  • 안내도 보급 및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규정(안 제8조)

  • 장성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로 결정

  •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장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고시

- 토지 등의 출입증 신설(안 제14조)

  • 출입증 및 발급대장 서식 규정(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21조)

  • (명칭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 변경

  • (구　　성) 위원장**(부군수)**을 포함 7명 이상 15명 이내 성별 고려, 민간위원은 위원장 제외 2분의 1이상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의결사항)

- 금고 약정기간 “3년”을 “4년”으로 변경(안 제4조)
- 수수료의 납부 방법 확대(안 제3조) 제1항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군이 수입하는 수수료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징수한다.”로, 제2항 중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안 제5조의3 제2항) 제2항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를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
-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명기(안 부칙 제2조)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제2항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며,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장성군수

○ **제출일자** : 2021. 6. 3.

○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9호) 일부개정으로 농기계 임대료 반영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임대료 반액감면 추가
-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농기계심의위원회 기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임대농기계 선정 및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의결사항)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임대료 기준 변경(제9조제1항 및 제9조2항)
  - (현행) 임대료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별표1의2를 적용
- 임대료 반액감면 추가(제10조제1항제2호)
  - (신설)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경우 2분의 1 감면
- 임대료 반액감면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시(제10조제2항)
  - (현행) 임대료 감면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 첨부
  - (개정) 임대료를 감면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시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기능 삭제(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기타 문구 수정 및 조문 정리(안 제3조, 제8조, 제2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